

동고학연구소 규정

- 제정 : 1983. 05. 01
- 개정 : 1989. 03. 01
- 개정 : 1996. 03. 01
- 개정 : 1997. 03. 01
- 개정 : 1998. 03. 01

제1조(명칭) 이 연구소는 수원대학교 부설 동고학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.)라 칭한다.

제2조(목적) 본 연구소는 동고 이준경선생의 학문, 사상 및 정치 경륜을 중심으로 연구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학문 분야를 연구하여 한국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위치) 본 연구소는 수원대학교 내에 둔다.

제4조(사업) 본 연구소는 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.

1. 동고문집의 국역 및 학술연구 사업
2. 관련자료의 조사, 수집 및 정리
3. 연구지 <동고학 논총>을 연 1회이상 간행 및 기타 도서 출판
4. 자료전시 및 연구세미나 개최
5. 기타 부대사업

제5조(조직) 본 연구소의 구성은 고문 및 소장을 포함하여 연구위원 12인 이상으로 하고 연구위원은 본교 전 임교원 중 소장의 재청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.

제6조(고문 및 소장) ① 고문은 학교법인 고운학원 이사장이 되며, 본 연구소의 발전을 위해 제반 업무에 관하여 자문한다.

②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본 연구소의 사무를 총괄한다.

③ 소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7조(운영·편집위원회) ① 본 연구소에 운영위원회 및 편집위원회를 둔다.

② 각 위원회의 의장은 소장이 하되 위원은 본 연구소의 연구위원중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임명한다.

③ 각 위원수는 5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④ 각 위원회는 소속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되며, 그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유효하다.

⑤ 소장을 보좌하고 위원간의 의사조정 및 대외업무 추진을 위해 위원중 간사 1인을 둔다.

제8조(운영위원회 업무)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무를 심의·관장한다.

1. 본연구소의 기획, 운영 일반에 대한 심의 협조
2. 전문 학문 분야의 조사, 수집 및 연구, 집필자의 선정
3. 출판도서의 기획, 편집 및 세미나 개최
4. 기타 사무

제9조(편집위원회 업무)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·관장한다.

1. 연구지, 도서출판의 기획
2. 집필자 및 연구심의회 위촉

제10조(자문위원) 본 연구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교내·외에서 자문위원을 추대할 수 있다.

제11조(연구원 및 조교) ① 본 연구소에는 상임연구원 약간명과 조교를 둘 수 있다.

② 상임연구원 및 조교는 본 연구소 사업에 따른 제반 연구활동을 수행한다.

제12조(연구교수) 소장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교수 약간명을 위촉할 수 있다. 다만 연구교수의 임명 및 대우는 학교법인 고운학원의 교원 임용규정을 준용한다.

제13조(예산) 소장은 매년 2월말까지 익년도 예산을 작성하여 총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.

제14조(운영세칙) 본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.

제15조(규정의 개폐 및 해산) 본 연구소 규정의 변경 및 해산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198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